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동욱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49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27일
발 의 자: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김태수,
남궁역, 박춘선, 봉양순,
신복자, 유만희, 윤종복,
이봉준,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0명)

1. 주문

-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후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 기준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함.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난동 행위로 인해 안전 운행이 어려운 경우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객이 운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능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승객의 난동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2. 제안이유

-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승객이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며,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현행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승객의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여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대중교통 내 소란 행위 처벌은 벌금 10만원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광버스와 같은 장거리 이동 차량에서 발생하는 음주 난동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함.
-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퇴거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승객의 난동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여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이 필요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법」의 벌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여 난동 승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의 제지를 무시한 채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며,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승객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난동을 부려 차량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대중교통 내 소란 행위에 대해 벌금 1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관광버스와 같은 장거리 이동 차량에서 승객이 음주 후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단순 소란을 넘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로 인해 운전자가 운행을 중단하고 경찰을 호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퇴거 조치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승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승객의 난동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여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 내 질서를 유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광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의 합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벌금 기준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승객이 운전자의 정당한 안전 조치를 거부하거나 차량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전자가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승객의 음주 난동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버스 내 승객의 난동 행위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보장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며,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 스스로가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후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 기준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하며,

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난동 행위로 인해 안전운행이 어려운 경우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승객이 운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고,

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명확히 하며, 승객의 난동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2025.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